

	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· 평가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9. 05. 3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목포과학대학교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(이하 “교육과정개발”이라 한다)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역량기반 현장중심 교과목”이란 대학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또는 직무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 및 평가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 및 대상) ①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.

②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핵심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과정 개발 절차) 교육과정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항의 단계별 산출물을 포함 하여야 한다.

① (환경분석 및 요구분석) 외부환경 분석, 내부환경 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하여 인재양성유형 설정의 기본이 되는 직업(군)을 선정한다.

1. 외부환경 분석 : 산업동향, 인력동향, 지역동향
2. 내부환경 분석 : 학과현황, 학생현황, 교원현황
3. 요구분석 : 인재양성유형별 기초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관련 내용에 대한 요구분석
4. 산출물 :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,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결과, 직업(군) 선정표

② (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) 대학의 비전,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유형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목표를 수립한다.

1. 직업(군)선정 :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업(군)을 선정한다.
2. 인재양성유형을 직업(군) 및 그 하위의 직무수준에서 정의하고 주요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.

3. 인재양성유형에 맞추어 학과의 교육목표를 도출하되 대학의 비전, 교육목표,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4. 산업체 전문가 및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.
5. 산출물 : 학과의 인재양성유형(표), 학과의 교육목표, 위원회 구성, 위원회 회의록

③ (역량기반 교육과정 모형 설정) 전공역량 후보군 별로 도출된 사항을 행동지표로 구성한다.

1. 전공역량 도출 : 역량 후보군 도출, 전공역량 도출, 전공역량 정의 및 체계, 행동지표 기술
2. 전공역량 검증 : 졸업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 했을 때 고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보여

지는 행동특성,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, 기술,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.

3. 행동지표 검증

4. 행동기준척도 검증

5. 행동기준 척도 수준 확정 : 최종 선정된 행동기준척도를 바탕으로 검증 및 수준을 확정한다.

6. 역량기반 최종모형 설정 : 교양핵심역량과 전공직무역량에 따른 역량기반 최종모형을 설정한다.

7. 전공역량 행동지표 및 K·S·A 도출 : 검증을 통해 선정된 기초핵심역량에서 요구되는 행동지표 및 전공역량 요소/작업(Task)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준거 및 지식·기술·태도를 도출한다.

8. 전공직무역량 교과목 도출 : 선정된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

9. 교육과정 전공직무역량 교과목 타당성 검증

10. 산출물 : 직무정의, 전공역량모형, 역량모형 검증표

④ (역량체계 구성) 역량체계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1. 핵심교과목 교수학습 설계

2. 교수학습 설계 교과목 개발 계획

3. 교과목신구대비

4. 교육과정 로드맵

5. 교육과정편성표

6. 산출물 :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

⑤ (교과목 프로파일 작성) 도출된 교과목의 주요내용을 기술하는 교과목 프로파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.

1. 교과목명, 관련 역량, 하위역량, 교과목 개요 및 특징, 교육정보, 평가방법, 장비 및 도구 등을 포함한다.

2.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·학습 및 평가방법을 가능한 명확하게 기술한다.

3. 산출물 : 교과목별 프로파일

제5조(교육과정 개발 완료) 교육과정은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모든 단계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.

①(1차보고서 제출) 학과장은 제4조의 단계별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는 “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보고서”를 교육혁신처에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(보완) 학과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보완·개발하여야 하며 교육혁신처는 제출된 1차 보고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시 학과장에게 보완을 요청할수 있다.

③(2차보고서 제출) 학과장은 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 “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2차보고서”와 “보완요구사항 조치내역서”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(개발 완료) 교육혁신처는 교육과정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총장의 허락을 득하면 “역량기반 현장중심교육과정개발 완료

보고서"로 인정되며 교육과정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수업설계) ①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매 학기 개시 전 교육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해당 강의의 운영을 위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
②강의계획서는 교과목 기본정보, 관련 역량,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정보, 주차별 학습내용,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되 교과목 프로파일에 명시된 요소 및 수행준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.

제8조(수업운영) ①역량기반 교과목의 수업에서는 개발된 전공역량과 하위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. 단, 교과목별 역량이 미개발된 경우는 개발될 때까지 기존의 유사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(교수학습지침서)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지침서(이하 "지침서"라 한다)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

1. 지침서는 교수자 및 학습자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워크북, 교안 등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.

2. 지침서는 교육혁신처장이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

③(교수학습방법)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이론강의, 실습, 발표, 토론, 팀프로젝트, 캡스톤디자인,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여 수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직업기초능력) ①교육과정개발 단계에서 도출한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해당 직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여야 한다.

②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수업도 이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.

③수업 운영 시 교수자 및 학습자용 자료 활용을 권장하나 교수학습지침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.

제10조(수업평가) ①(평가구성) 수업평가는 출석평가, 과제,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해야 한다.

②(평가계획) 교수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자는 담당강좌의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해야 한다.

2. 확정된 평가계획서는 강의계획서 게시 기한 중에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.

③(출석평가) 학습자의 기본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출결평가이며 평가기준은 학칙에 따른다.

④(직무수행능력평가) 행동지표 및 관련 지식/기술/태도에 대한 평가이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

1. 교수자는 강좌 당 2회 이상의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2. 교수자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, 문제해결 시나리오, 서술형시험, 논술형시험, 사례연구, 평가자 질문, 평가자 체크리스트, 피평가자 체크리스트, 일지/저널, 역할연기, 구두발표, 작업장평가 중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4. 교수자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1회 실시할 때마다 각 학생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⑥(평가결과) 계획서의 모든 평가가 종료되면 교수자는 각 학생에 대하여 출석평가와 직무수행능력들을 종합한 평가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.

제11조(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) ① 편성된 교육과정은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과별로 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한다.

② 학과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전공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부합되게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연계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한다.

③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은 관련 센터 및 학과에서 운영한 후 평가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.

④ 수업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향상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⑤ 각 학과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도출한 학과 자체평가 및 CQ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1. 학과장은 학과자체평가 내용이 반영된 "학과자체평가 및 CQI보고서"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교육혁신처는 교육과정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총장의 허락을 득하면 "학과자체평가 및 CQI보고서"로 인정된다.

⑥ 대학은 학과 자체평가 및 CQI보고서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